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0 선고 2020나316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0 선고 2020나31682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331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피고, 항소인1. B

2. C

3. D

4. E

변론종결2021. 4. 6.

판결 선고2021. 4. 20.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331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76,4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4.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76,4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G은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나. G은 2013. 4. 12.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H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5. 8.경 원고 명의의 또 다른 신용카드(H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서 14,594,640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포함해 14,600,000원을 즉시 G에게 송금하였다.

라. G은 2019. 1. 19.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인 딸 I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G의 형제자매로서 후순위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에 더하여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2013. 4.경 원고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년 동안 그 약정을 이행하여 오던 중 2018. 11.분과 2018. 12.분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5,202,567원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② G은 2017. 8. 3. 원고에게서 14,6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F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왔는데, G의 사망일에 가까운 2019. 1. 14. 현재 남은 차용금은 11,103,149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4,076,429원[= 차용금 11,103,149원 +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5,202,567원 × 상속분 4분의 1]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최초로 그 지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5.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G이 2018. 5. 18. K조합에서 7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40,594,189원을 F은행에 송금하여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원고의 L조합 계좌로 5,129,440원과 2,500,000원을 송금하여 차용금 채무 중 7,629,440원(= 5,129,440원 + 2,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G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18. 5. 18.

40,594,189원을 송금한 상대방은 F은행 아니라 주식회사 M이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G이 2018. 5. 18. 원고의 L조합 계좌로 입금한 5,129,440원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입금한 2,500,000원은 G이 2013. 9. 2. 원고에게서 차용한 1,000,000원(원고는 G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100,000원을 공제하고 900,000원만 입금하였다)과 2016. 9. 12. 차용한 1,000,000원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5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백대현

판사이재민

판사고병용